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4년 10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14년 11월 5일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중심지 지원기준을 법제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시의 의무사항으로 정함(안 제3조).

나.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8조, 제15조).

다. 금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제11조).

라.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금융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 일대를 포함한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금융시장의 대·내외 환경 변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 IB(Investment Bank)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했던 두바이나 더블린과 같은 역외금융중심지가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실물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이 글로벌

경제회복을 주도하면서 해당 지역 금융시장이 더 많이 주목받고 있음.

○ 아시아 국가의 금융경쟁력 강화와 함께 서울시(이하 “시”)는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Z/Yen(지옌)그룹이 매년 2회 발표하는 세계 금융도시의 경쟁력 평가지표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2010년 9월 24위를 기록했으나 2014년 9월 발표에는 8위로 급상승하였음[1].

〈표 1〉 역대 GFCI 서울시 순위

| 구분 | 8회 ('10.9월) | 9회 ('11.3월) | 10회 ('11.9월) | 11회 ('12.3월) | 12회 ('12.9월) | 13회 ('13.3월) | 14회 ('13.9월) | 15회 ('14.3월) | 16회 ('14.9월) |
|---|---|---|---|---|---|---|---|---|---|
| 순위 (상승폭) | 24위 | 16위 (▲8) | 11위 (▲5) | 9위 (▲2) | 6위 (▲3) | 9위 (▽3) | 10위 (▽1) | 7위 (▲3) | 8위 (▽1) |

※ 평가대상 도시 : 83개('12년 77개 → '14년 83개)

○ 시와 함께 국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83개 평가대상 도시 가운데 28위로 평가받았음.

○ 금융규제의 안정성과 정치 환경의 건전성 등 금융시스템이 견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은 금융경쟁력 상위 도시들로 지속적인 글로벌 금융허브 역할을

1) GFCI는 영국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Z/Yen 그룹이 연2회(3월, 9월)이 평가하는 국제금융평가지수로 전 세계 금융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적자원, 비즈니스 환경, 시장접근성, 인프라, 일반경쟁력의 5개 분야에 대한 주요 기관의 평가를 종합해 평가함. Top 10(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 샌프란시스코, 도쿄, 취리히, 서울, 보스톤, 워싱턴DC)

유지하고 있음.

○ 이들 금융 경쟁력 상위 도시들은 금융규제의 선진화, 금융자유화,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도입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참고자료 1).

○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간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투자회사 출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여의도와 부산광역시 문현 등 2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의 금융시장 육성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수익성 악화와 금융규제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의 사업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2].

**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현황**

○ 정부는 금융기관의 집적 도모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고시하였음[3].

○ 이에 따라 시는 여의도 일대를 국제 금융클러스터로 조성하기

---

2) 2012년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법인 철수, HSBC그룹의 한국 소매금융 사업 철수, 한국씨티그룹캐피털 매각결정 등 최근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의 사업 축소가 이어지고 있음.

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호

위해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해외 IR활동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외국계 금융사의 여의도 유치를 위해 AIG와의 계약을 통해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이곳에는 현재 33개 금융사를 비롯해 3개의 오피스 빌딩에 모두 79개사가 입주하였음(참고자료 2).

○ 하지만, 여전히 SIFC내 외국계 금융기관의 입주율이 임대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약15%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국제금융 집적지로서의 위상이 유명무실한 상황임[4].

○ 서울에는 현재 모두 155개의 외국계 금융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159개)의 97.5%에 해당하는 규모임.

○ 특히, 서울시에 소재한 외국계 금융기관 155개소 가운데 여의도에는 2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외국계 금융기관의 13.5% 수준임(참고자료 3).

○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집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당초 구상과 같이 여의도 일대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심권과 강남권에 산재해 있는 대다수 국내·외 금융

4) 3개 오피스 빌딩의 전체 면적규모는 328,486㎡이며 이 가운데 외국계 금융기관의 임대면적은 전체의 14.16%인 26,716㎡에 불과함.

기관의 여의도 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안 제4조~제8조, 제12조 및 안 별표)**

○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에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 자금 등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시장에게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각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5조는 서울에 신규 진입하는 금융기관에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기관당 10억원 한도)을, 안 제6조는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신규고용자금(기관당 2억원 한도)을, 안 제7조는 내국인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자금(기관당 6천만원 한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가 국내·외 금융기관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법인세를 비롯한 다른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산업 관련 규제의 폐지 등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판단됨.

○ 부산시의 경우에는 입지보조금(50억원 한도), 고용보조금(2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2억원),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10억원 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금융기관 서비스 기관 이전 지원, 지방세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이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통행료 면제와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5].

○ 다만, 안 제12조의 규정과 같이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이나 방문조사 권한의 설정 등 사후 관리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인 금융기업의 이전이나 고용과 관련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나 보조금 지급과 사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사익을 추구하는 국내·외 금융기업이 시가 지급하는 제한된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전하거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급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임.

---

5)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관련법령에서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 이익을 위한 자금지원을 국가가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사정을 고려해 실제 보조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4).

**마.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1조)**

○ 안 제9조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근거를,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시의 금융산업 육성 추진계획과 각종 시책의 심의는 물론이고,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자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심의,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건의와 제도개선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특히, 안 제11조의 규정과 같이 위원회내에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임.

○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운영에 따른 행정력의 분산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같은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바.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환경 조성 등(안 제13조~제15조)**

○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금융산업 육성과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근거와 관계기관 협력, 서울국제금융지구에서 신규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금융산업 육성이나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서울국제금융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외국 금융기구의 유치나 금융기관의 집적은 제한된 보조금의 지급이나 거주 환경개선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정부 혹은 금융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강화와 법·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 국제 금융중심 도시의 인센티브 현황

## □ 법인세율 현황

| 한국 | 홍콩 | 싱가포르 | 상하이 | 런던 |
|---|---|---|---|---|
| 22% | 16.5% | 17% | 25% | 21% (→'15년 20%) |

※ 영국 법인세 20%('15.4월 예정) : G20 국가 최저수준

## □ 각종 금융관련 인센티브

| 구 분 | 주요 제도 및 특징 |
|---|---|
| **싱가포르** | - 이자, 배당, 자본이득에 대한 광범위한 비과세 및 면제혜택 등<br>- 지역본부에 대한 낮은 세율 (5%, 10%)<br>- 외환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음(24시간 거래가능)<br>-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금융전문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입에 대한 개방정책<br>- 경쟁력 있는 통신 허브로 세계 어디와도 거래가 가능 |
| **홍 콩** | - 단순한 조세항목과 낮은 세율, 이자 · 배당 · 양도에 대한 비과세<br>- 홍콩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본부 입지 유리<br>- 고정환율제로 안정적인 환율,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없음<br>- 영어 사용에 따른 국제업무 노동력 제공 가능<br>-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 우수<br>※ 중국과 CEPA협정 체결로 상품, 서비스 수출시 무관세, 최대 교역상대국 |
| **런 던** | - 영 · 미계의 사법체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제<br>-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의 지속적 인하<br>-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부동산 소득, 연금, 근로소득 면세<br>- 비즈니스의 편리성(설립 · 운영, 노동 규제, 금융 자본 획득 용이) |
| **두바이** | - 공정한 경쟁확립(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Global Standard 환경조성<br>(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법과 규정, 원스톱 비자, 노동허가증 발급)<br>- 법규 · 규제 선진화(본국 송금 자유화, 100% 외국인 소유권 허용,<br>소득과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br>- 거래통화 USD, 영어사용, 업무일 조정 및 근무시간도 런던시장과 동일<br>- DIFC 건립 및 외국계 금융사 유치('04.9월 완공)<br>▸금융중심지 정책 시행 후 3년 6개월만에 590개 금융업체 등 유치 |
| **상하이** | - 10년이상 사업영위 조건에서 2년 법인세 면제, 3년간 법인세 50% 감면<br>-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비 지원, 금융 전문인력 소득세 환급 등<br>- SWFC 건립('08.9월) 및 외국계 금융사 유치 ('13년 임대 완료)<br>▸외국계 금융사 : 20개사(총 면적대비 40%) |

**※ 서울시 조사자료**

〈참고자료 2〉

# 서울국제금융센터 현황

##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23-1

○ 면　　적 : 대지 33,058㎡(10,000평), 연면적 505,236㎡

○ 총사업비 : 1조 5,140억원(해외조달 4,540억, 국내차입 1조 600억)

○ 개발방식 : 서울시(토지임대), AIG(투자, 개발, 운영)

○ 건설기간 : 2006년 ~ 2012년

○ 구　　성

| 구　　분 | 높 이(m) | 층 수 | 총면적(㎡) | 구　　분 | 높 이(m) | 층 수 | 총면적(㎡) |
|---|---|---|---|---|---|---|---|
| Three IFC (오피스타워III) | 284 | 55층 | 130,944 | IFC Mall (쇼핑몰) | - | 지하 1~3층 | 77,827 |
| Two IFC (오피스타워II) | 175 | 29층 | 63,253 | 지하주차장 | 2,046대 | 지하 4~7층 | 85,194 |
| One IFC (오피스타워I) | 184 | 32층 | 70,140 | 지하공공보도 (여의도역~IFC) | 연장 363, 폭 7.0~7.2(m) | | |
| 콘래드 서울 호　　텔 | 199 | 38층 | 77,878 | | | | |

## ▢ 연도별 입주사 현황

| 구　　분 | | '12.12월 | '13.12월 | '14.12월 | '15.02.03 |
|---|---|---|---|---|---|
| 전 체 | **합계** | **38개사** | **53개사** | **80개사** | **79개사** |
| | 금융사 | 18개사 | 25개사 | 34개사 | 33개사 |
| | 금융지원사 | 8개사 | 12개사 | 19개사 | 18개사 |
| | 비금융사 | 12개사 | 16개사 | 27개사 | 28개사 |
| One IFC | 소계 | 30개사 | 30개사 | 30개사 | 29개사 |
| | 금융사 | 16개사 | 16개사 | 15개사 | 14개사 |
| | 금융지원사 | 6개사 | 6개사 | 6개사 | 6개사 |
| | 비금융사 | 8개사 | 8개사 | 9개사 | 9개사 |
| Two IFC | 소계 | 8개사 | 23개사 | 49개사 | 49개사 |
| | 금융사 | 2개사 | 9개사 | 19개사 | 19개사 |
| | 금융지원사 | 2개사 | 6개사 | 13개사 | 12개사 |
| | 비금융사 | 4개사 | 8개사 | 17개사 | 18개사 |
| Three IFC | 소계 | - | - | 1개사 | 1개사 |
| | 금융사 | - | - | | |
| | 금융지원사 | - | - | | |
| | 비금융사 | - | - | 1개사 | 1개사 |

## ▢ 금융기관 입주율 (임대면적)

| 구 분 | | 건물별 전체 (임대가능면적) | 임대완료 | 금융관련 기관 (임대완료 면적 대비) | | |
|---|---|---|---|---|---|---|
| | | | | 소 계 | 금융기관 | 금융지원 |
| One IFC | 면 적 | 89,458㎡ | 87,860㎡ | 50,599㎡ | 18,322㎡ | 32,277 |
| | (비 율) | | (98.21%) | (57.59%) | (20.85%) | (36.74%) |
| Two IFC | 면 적 | 77,922㎡ | 70,761㎡ | 25,282㎡ | 15,338㎡ | 9,944 |
| | (비 율) | | (90.81%) | (35.73%) | (21.68%) | (14.05%) |
| Three IFC | 면 적 | 161,106㎡ | 30,286㎡ | – | – | – |
| | (비 율) | | (18.8%) | – | – | – |
| 합 계 | 면 적 | 328,486㎡ | 188,907㎡ | 75,881㎡ | 33,660㎡ | 42,221 |
| | (비 율) | | (57.5%) | (40.17%) | (17.82%) | (22.35%) |

※ 임대(가능)면적은 주차공간을 포함, 건물 연면적과 상이

## ▢ One IFC : 총 29개사, 연면적의 98.2%

○ 금 융 14개사(해외 8, 국내 6), 금융지원 6개사 (해외 3, 국내 3), 비금융 8개사(해외 4, 국내 4), 기타 1개사(해외 1)

| | |
|---|---|
| **금 융 (14)** 미국(4), 프랑스(1), 호주(1) 일본(1), 중국(1), 한국(6) | • 자산운용(3개국 5개) : 호주 맥쿼리자산운용, **美 CBRE부동산자산운용, 美 인베스코,** 韓 RAK자산운용, 韓 FG 자산운용<br>• 증 권(3개국 3개) : 日 다이와, 佛 CLSA, **中 자오상**<br>• 은 행(2개국 3개) : 美 뉴욕멜론, 韓 기업, 韓 국민<br>• 외환중개(1개국 1개) : 美 Gooch Financial Investment,<br>• 신 탁(1개국 1개) : 韓 AZ Worth Trust,<br>• 헤지펀드(1개국 1개) : 韓 대우증권 헤지펀드 |
| **금융지원 (6)** 미국(3) 한국(3) | • 회계법인(1개국 1개) : 韓/英 딜로이트안진<br>• 컨 설 팅(1개국 1개) : 韓 Quantum Consulting<br>• 금융IT 서비스(1개국 2개) : 美 선가드, 美 Citrix<br>• 보험사정 대행(1개국 1개) : 美 AIG Services<br>• 투자행정 지원(1개국 1개) : 韓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 **비금융(8)** 미국(2), 일본(2), 한국(4) | • 제조(3개국 6개) : 美 필립모리스, 日 아사히 카세이, 日 소니, 韓 LG하우시스, 한 LG화학, LG MMA<br>• 정보통신 서비스(1개국 1개) : 美 OSI Soft<br>• 무역(1) : 韓 레이스타 |
| **기타** 미국(1) | • 스포츠센터(1) : 美 리복 크로스핏 |

□ Two IFC : **총 49개사, 연면적의 90.8%**

○ 금융 19개사(해외 16, 국내 3), 금융지원 12개사 (해외 8, 국내 4), 비금융·기타 18개사(해외 11, 국내 7)

| | |
|---|---|
| **금 융(19)**<br>일본(1),미국(9)<br>싱가폴(3),한국(3)<br>중국(2), 홍콩(1) | • 자산운용(5개국 13개) : 日 코스모자산운용, 美 러셀인베스트먼트, 美 EIG글로벌에너지파트너스, 美 Lasalle, 中 샤프게인코리아, 韓 Euro Asset, 韓 Glenwood, 韓 마이애셋, 美 Energy Holdings, 美 Energy Innovation, 中 East Sea, 싱가폴 ARA코리아, 싱가폴 Point Hope Korea<br>• 보험(1개국 3개) : 美 AIG Advisors, AIG Global Partners, AIG Korea<br>• 헤지펀드(2개국 2개) : 싱가폴 Leonie Hill Capital, 美 뉴레이크얼라이언스매니지먼트<br>• 카드서비스(1개국 1개) : 홍콩 APU Korea |
| **금융지원(12)**<br>한국(4),미국(4)<br>영국(2),<br>인도네시아(1),<br>홍콩(1) | • 컨설팅(2개국 4개) : 韓 마콜, 英 L.E.K, 韓 Tangible Plus 컨설팅, Casting Investment<br>• 부동산개발(1개국 1개) : 美 Jons Lang Lasalle<br>• 법무법인(2개국 2개) : 美 Baker & McKenzie, 英 Stephenson Harwood<br>• 정부기관(1개국 1개)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r>• 금융IT 서비스(1개국 1개) : 美 I.T. Source<br>• 인사컨설팅(2개국 2개) : 美 Act-1, 韓 YNK<br>• 비즈니스센터(1개국 1개) : 홍콩 TEC |
| **비금융(16)**<br>일본(3),독일(2)<br>한국(6),미국(4)<br>네덜란드(1) | • 제조(5개국 8개) : 日 덱세리얼(소니화학 자회사), 獨 니베아, 美 오티스엘리베이터, 韓 근화제약, 韓 LG전자, 日 Asahi Kasei MD, 韓 부강Sems, 네덜란드 Oxy Reckitt Benckiser<br>• 문화재단(1개국 1개) : 韓 LG연암문화재단<br>• 서비스(4개국 7개) : 美 ABS(선박), 美 Zebra Technologies(IT), 韓 IDS(온라인 교육), 日 NTTK(IT), 韓 Dimension Korea(IT), 獨 TUV(기술시험 검사분석), 美 AIGKRED(부동산) |
| **기타**(2) | • 편의시설(2개) : 美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韓 한국의료재단 |

□ Three IFC : **총 1개사, 연면적의 18.8%**

○ 비금융 1개사(해외 1)

| | |
|---|---|
| **비금융**(1)<br>미국(1) | • IT서비스 : 美 IBM |

□ **호텔 동 : 콘래드 호텔과 운영 계약 ('09.11월)**

□ **쇼핑몰 : 81개 업체 (CGV, 영풍문고, ZARA 등)**

〈참고자료 3〉

# 서울시내 금융기관 현황

## ▢ 서울의 외국계 금융기관 (′14. 12월말 기준, 금융위 인가기준)

○ 총 155개소

-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기관(159개)의 97.5% (경기1, 부산1, 경남1, 충남1)

※ 경기 : 크레디 인더스트리엘 에 커머셜(CIC) - 은행(사무소) / 부산 : 야마구찌 - 은행(지점)
충남 : 캐터필라파이낸셜 /경남 :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 여신전문(현지법인)

○ 분야별 세부현황

| | |
|---|---|
| · 은 행 : 56개 (지점 38, 사무소 18) | |
| · 증 권 : 23개 (현지법인 10, 지점11, 사무소 2) | |
| · 자산운용 : 25개 (현지법인22, 사무소3) | · 투자자문 : 9개 (현지법인5, 사무소4) |
| · 보 험 : 30개 (손해보험20, 생명보험10) | · 여신전문 : 12개 (현지법인12) |

## ▢ 서울의 국내 금융기관〔본점〕 (′14.12월 현재)

○ 총 147개소

-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내 금융사 기준(지방은행 등은 불포함)

○ 분야별 세부 현황

| | |
|---|---|
| · 은 행 : 12개 | · 증 권 : 40개 |
| · 자산운용 : 64개 | · 보 험 : 31개 |

## ▢ 금융중심지(여의도)의 금융기관 (’14.12월 현재)

○ 외국계 금융기관 : 21개소

- 서울 전체 외국계 금융기관(155개소)의 13.5%
- 분야별 세부현황

| |
|---|
| · 은 행(3) : **뉴욕멜론은행**, 내쇼날커머어셜뱅크 오브 사우디아라비아 은행(NCB),**BBCN은행** |
| · 증 권(4) :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CLSA코리아증권**, 신은만국 증권, **자오상 증권** |
| · 자산운용(9)<br>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CBRE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br>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ING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br>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코스모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라살 자산운용,** |
| · 투자자문사(3) : **BNY멜론, 러셀인베스트먼트,** 캐피탈다이나믹스리미티드 |
| · 보 험(1) : 알리안츠생명보험 |
| · 여신전문사(1) : 에이치피파이낸셜 |

⇒**IFC서울 입주** : 21개사 중 **11**개사

※ BNY멜론은 부문별 인가받아 2개사로 집계됨 : 은행-뉴욕멜론, 투자자문-BNY멜론

○ 국내 금융기관 (본점) 82개소

- 서울 전체 국내 금융기관(147개소)의 55.8%
- 은행 : 2개, 증권 32개, 자산운용 45개, 보험회사 3개

⇒ IFC서울 입주 : 82개사 중 9개사

〈참고자료 4〉

# 관 계 법 령

##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도지사의 자금지원)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 그 밖에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① 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2.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3. 금융기관의 업종,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

4. 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제14조의4(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규모,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4호)

제7조(자금지원의 한도) ① 국가가 영 제14조의3제1항과 이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6조제2항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다만, 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당 금액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6조제3항제1호의 신규고용자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3. 제6조제3항제2호의 교육훈련자금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은 각 항목별로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가 개별 금융기관등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의 총액은 해당 금융기관등 총 필요자금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별지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목록과 기관별로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자금 지원 예정액

2. 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서

3.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에 의한 자금 지원 예정액

4. 지원대상 금융기관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